

일본 개호직원의 노인학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임 정 미*

(e-mail : jekljm@gmail.com)

< 목 차 >

- | | |
|-----------|------------|
| 1. 서론 | 4. 연구결과 |
| 2. 이론적 배경 | 5. 결론 및 제언 |
| 3. 연구방법 | |

키워드 : 老人虐待認識(Recognition of Elder abuse), 人口社会学的要因(Socio-Demographic Factors), 介護職員(Care Staff), 介護老人福祉施設(Nursing Home), 日本(Japan)

1. 서론

일본에서는 2006년 고령자학대의 방지, 고령자의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高齢者虐待の防止, 高齢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이하, 노인학대방지법)이 시행되었고 학대예방을 위한 시·정·촌(市町村)과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노인학대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의해 노인학대 관련 전국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시설 내 노인학대 관련 상담·신고건수는 273건, 그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54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3년 시설 내 노인학대 상담·신고건수는 962건으로 증가하였고 노인학대로 판정된 사례 역시 221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14년 시설 내 노인학대와 관련된 상담·신고건수는 1,120건, 그 중

* 도시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노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300건에 달한다¹⁾.

이와 같은 시설 내 노인학대는 노인인구의 증가, 특히 인지증(認知症) 노인의 증가와 이들 노인의 시설입소로 인해 향후 더욱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입소노인의 인지기능의 저하와 시설이 가지는 구조적 특징 때문에 학대의 발생 및 잠재화가 염려되기 때문이다(松本(2013), p.44).

예를 들어 시설에 입소하는 노인은 재택에서의 생활이 불가능해 최후의 수단으로 시설입소를 선택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김경민 외(2009), p.399) 재택에서 생활하는 노인보다 인지기능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낮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노인의 인지기능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저하는 학대의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대발생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Schiemberg et al(2011), p.196). 더욱이 지역사회로부터 단절되어 운영되는 입소시설의 폐쇄적 환경과 밀실성은 제 삼자, 즉 외부인이 학대를 발견하고 대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시설 내 노인학대의 사실은 은폐되고 잠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구조적 특징을 지닌다(岩田(2015), p.2).

이러한 노인학대는 피학대 노인의 활동성을 감소시키고 인지적인 손상 및 장애의 발생을 증가,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우울 및 조기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Choi et al(2000), p.12, Dyer et al(2000), p.207) 시급한 해결을 요구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피학대 노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도 잠재화되기 쉬운 입소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에 대한 개입과 사전 예방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한편 다수의 연구가 개호직원의 학대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노인 학대예방에 매우 유용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松本(2015), p.44, 任(2014), p.57, Shinan-Altman et al(2009), p.674). 왜냐하면 개호직원(介護職員)²⁾의 학대인식은 향후 개호자의 개호행위 및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Shinan-Altman et al(2009, p.676), 노인학대 발생시 표준화된 혹은 공통된 사회적 개입 및 대응을 수행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1) 厚生労働省(2007, 2016) 『平成18年度、平成26年度高齢者虐待の防止、高齢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に基づく対応状況等に関する調査結果』를 참고로 작성.

(http://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hukushi_kaigo/kaigo_koureisha/boushi/)

2) 개호직원(介護職員)은 일본의 고령자복지시설에서 케어(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함.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 심신의 상황에 맞는 개호(介護, 케어)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케어대상자와 가족부양자에게 케어와 관련된 지도를 실시한다(김경민 외(2012), p.243).

(大塩(1997), pp.179-180). 나아가 시설 내 노인학대를 가장 많이 목격하고 상담·신고하는 사람이 개호직원이라는 점에서(厚生労働省(2016), p.3),³⁾ 시설 내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개호직원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도 강조된다. 또 학대 예방 및 방지는 최종적으로 개호직원에 의해 제공되는 개호 서비스를 통해 실현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호직원의 인식개선에 대한 대응책은 학대예방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永島 외(2010), p.155).

이처럼 개호직원의 역할 및 인식, 즉 개호직원이 학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탐색하는 것은 학대예방에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호직원의 학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그 효과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있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시설 내 학대 관련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윤리적 문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Bonnie et al(2008), p.216). 예를 들어 시설 내 노인학대 연구는 해당 시설이 학대에 대한 경험을 외부로 알리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노인학대 연구에 대해 조사협력을 얻기 어렵고, 치료 혹은 케어가 우선되는 임상현장에 있어 학대의 개념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山田(2008), p.1308). 뿐만 아니라 학대 연구가 부족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개호직원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매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노인학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 개호 스트레스, 번 아웃(burn-out)등이 제시되고 있다(松本(2015), p.55, Shinan-Altman et al(2009), p.681). 이러한 요인 중에서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주목하여 개호직원의 노인학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려한다. 그 이유는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노인학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간과될 수 없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증분석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사카모토(坂本)(2012:44)는 노인학대 인식에 차이가 발생하는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케어 매니저(care manager)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

3) 厚生労働省(2016) 『平成18年年度, 平成26年度高齢者虐待の防止, 高齢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に基づく対応状況等に関する調査結果』.
(<http://www.mhlw.go.jp/file/04-Houdouhappyou-12304500-Roukenkyoku-Ninchishougyakutaiboushitaisakusuishinshitsu/0000111665.pdf>).

다. 그 결과, 전문직의 지식과 경험(혹은 경험연수), 직종이 노인학대 인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다. 경험을 거듭할수록 학대사태가 발생하는 배경을 이해하게 되고 학대 판단에 신중해지며 이는 학대인식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또, 직종에 따라 학대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윤리관이 다르고 이는 학대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요인들이 학대인식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명확하게 실증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했다. 한편, 실증분석을 이용하고 있는 나가시마(永島) 외((2010), pp.155-158)는 자격증, 지식이 개호직원의 노인학대 인식과 관련이 있다고 제시했지만 특정 지역의 개호복지시설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선별적인 조사를 실시했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개호직원이라고 하는 집단이 가지는 노인학대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는 노인학대 인식에 관한 하위유형(존엄의 침해, 역할의 침해, 자율의 침해, 교류의 침해)의 특징을 탐색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각 하위유형의 학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은 중요한 연구들이 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개호직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학대인식의 관련성을 명확히 하고 개호직원의 학대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개호직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학대인식의 관련성을 명확히 하는 것은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된다.

본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 1) 개호직원의 노인학대 인식 수준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개호직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노인학대 인식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한다.
- 3) 개호직원의 학대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노인학대 정의

일본 노인학대방지법의 목적은 노인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노인학대 예방 및 양호자(養護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며(제 1조), 65세 이상의 노인

에 대한 양호자와 개호시설종사자에 의한 ①신체적학대 : 노인의 신체에 외상을 주거나 혹은 외상을 줄 염려가 있는 폭행을 가하는 것, ② 「방임 : 노인을 쇠약하게 하는 현저한 감식 혹은 장시간의 방치, 양호를 현저히 게을리 하는 것」, ③ 「심리적 학대 : 노인에 대한 현저한 폭언 혹은 현저한 거절적인 대응, 그 외 노인에게 현저한 심리적 외상을 주는 언동을 하는 것」 ④ 「성적학대 : 노인에게 외설적인 행위를 하는 것 혹은 외설적인 행위를 시키는 것」 ⑤ 「경제적 학대 : 양호자 혹은 노인의 친족이 해당 노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는 것, 노인에게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제 2조)⁴⁾.

그러나 일본의 노인학대 방지법은 노인학대의 개념 정의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라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와타나베(渡部(2008), p. 161)는 노인학대방지법의 학대 정의가 단순히 학대를 유형화한 것에 불과하고 노인학대의 총체적 개념이 무엇이며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카무라(中村(2012), p.79) 역시 노인학대 방지법의 학대 유형만으로는 상당수의 노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누락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레이존(gray zone)에 포함되는 부적절한 개호행위를 학대로 포함시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노인학대방지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노인학대의 정의와 유형화에 관한 시점과 의견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자마다 다양한 연구정의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中村(2012), pp.86-89; 任(2015), p.256). 이러한 경향은 다른 나라의 노인학대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학대는 한 가지 현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현상이 포함된 다차원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개념정의의 불일치의 문제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노인학대를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거나 노인학대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다(이민홍(2006), p.79).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대를 보다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특히 개호직원의 인권의식의 정도를 보다 폭넓게 파악하기 위해 준학대의 개념을 채용하여 개호직원의 학대인식을 측정하고자 한다. 준학대(任(2014), p.58)는 「일본의 노인학대방지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학대에 가까운 노인의 중요한 인권

4) 任貞美(2015) 「일본의 고령자 학대 『정의』에 관한 탐색적 연구: Systematic Review를 통해서」 『일본문화학보』 65, 일본문화학회, p.248.

을 침해하는 행위로 심신(心身)에 큰 스트레스를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뜻한다」. 준학대의 개념은 개호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학대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부적절한 케어와 부적절한 개호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화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이다.

2.2. 선행연구

일본에서는 노인학대 관련 연구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시설 내 노인학대 관련 연구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연구보다 많이 부족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과 정의에 거부감이 있고 조사의 협력을 얻기 어려울 뿐 아니라 노인학대에 대한 조사의 실시와 결과의 공표에 연구자 본인도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山田(2008), pp.1307-1308).

일본의 경우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에 관한 조사가 1994년 다나카(田中)를 중심으로 최초로 실시되었고 이어서 1998년 재가(在宅)와 시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인식 및 실태에 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山田(2008), p.1307)

2006년 노인학대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전국규모의 대표적인 노인학대 인식 및 실태조사는 인지증개호연구·연수센다이센터(認知症介護研究・研修仙台センター)의 노인학대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노인학대에 관한 실체를 규명했을 뿐 아니라 노인학대 이외에 노인학대라고 의심되어 지는 부적절한 개호행위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認知症介護研究・研修仙台センター(2008), pp.40-44). 개호직원의 인식에 근거한 조사이긴 하지만 노인학대방지법의 학대 정의에서 누락되고 있는 학대에 유사한 인권침해행위들의 실체를 규명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학대와 관련된 개호직원의 윤리관을 향상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조직운영의 건전화, 육아와 업무 스트레스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는 학대 예방을 위해 개호직원의 학대인식 및 윤리관을 함양시킬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한 필요성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추출되었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지닌다(松本(2013), p.44)

또한, 사카모토(坂本)(2012)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케어 매니저(care manager)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노인학대 인식수준이 상이한 이유에

대해 탐색했다. 그 결과, 전문직의 지식과 경험, 직종이 노인학대 인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학대인식과 어떠한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지 명확히 실증하지는 못했다.

이와 반대로 마츠모토(松本(2015), p.49)는 소규모 인지증 그룹홈에 종사하고 있는 개호직원을 대상으로 학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검토하고 개호복지사 자격증, 학대관련 지식 및 연수경험이 노인학대 인식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했다. 또 개호직원의 스트레스와 번 아웃(burn out)이 학대인식을 저하시키는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마츠모토(松本)의 연구는 994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실증조사를 통해 학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조사 대상자를 무작위로 선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답 바이어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조사에 회답한 개호직원의 경우 평상시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이 여타 개호직원들에 비해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소규모 인지증 그룹홈을 대상으로한 연구이기 때문에 보다 시설의 규모가 큰 개호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개호직원을 대상으로한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가시마(永島) 외((2010), pp.155-158)는 개호보험시설 사업소를 대상으로 개호직원의 개호서비스의 질에 대한 문제인식을 조사했다. 그 결과 개호복지사 자격증과 홈헬퍼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개호직원일수록 개호서비스에 대한 문제인식, 즉 부적절한 개호행위에 대한 개선의식이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근무경력(경험연수)과 개호직원의 문제인식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학대라는 문제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근무경력(경험연수)과 자격증 등 지식과 기술의 축적이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나가시마(永島)의 연구는 특정 지역의 개호노인복지시설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선별적인 조사를 실시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은 조사를 위해서는 조사설계에 있어 지역의 규모에 따른 시설별 특징의 차이를 줄이고 개호직원의 학대인식 및 역량에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샘플을 추출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존의 선행 연구는 개호직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학대인식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연구가 부족하고 특히 학대의 하위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관련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한정되어 있다. 이와 함께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는 연구 설계를 통해 이 두 변수의 관련성을 탐색할 필요

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층화이단 무작위추출법을 이용하여 전국의 개호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개호직원을 5000명을 대상으로 학대인식을 조사하고 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학대인식간의 관련을 실증적으로 검증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및 방법

조사 대상자는 일본 개호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개호직원 5,000명으로 했다. 표집방법은 층화이단무작위 추출법(Two steps of stratification random sampling)을 활용했다. 먼저 일본의 개호보험데이터 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전국의 개호노인복지시설 6,567개소에서 도도부현 별로 1,000개 시설을 등간격 추출했다. 이어서 추출된 1,000개 시설의 시설장에게 조사 의뢰문, 조사표와 회신용 봉투를 발송하고 현장에서 직접 개호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5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조사표와 회신용 봉투를 배포하도록 의뢰했다. 조사표를 작성 한 후에는 조사표를 작성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반송하도록 의뢰했다. 조사는 2012년 10월 11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되었다.

3.2. 측정도구

(1) 개호직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개호직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성별, 연령, 근무형태, 근무경력(개호업무와 관련된 직종에서의 총 근무경력), 학력, 보유하고 있는 흠헬퍼 자격증의 유무, 고령자학대 관련 교육경험, 개호복지 관련 제도에 관한 교육경험에 대해 측정하였다.

노인학대 관련 교육경험에 대해서는 「노인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회답방식은 「예」, 「아니오」로 구성되었다.

개호보험 관련 제도에 관한 지식정도에 대해서는 「2005년 개정된 개호보험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회답방식은 「예」, 「아니오」로 구성되었다.

(2) 노인학대 인식

본 연구는 일본의 개호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개호직원의 노인학대에 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任(2014)이 개발한 준학대(準虐待)척도를 활용하였다. 「준학대는 일본의 노인학대방지법의 노인학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학대에 유사한 노인의 중요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심신(心身)에 큰 스트레스를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任(2014), p. 58)」.

이는 학대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부적절한 케어와 개호환경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강화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노인학대방지법이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는 그렇지만 학대에 유사한 행위에 대한 내용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총 29개 항목으로 구성되고 입소노인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11항목), 역할을 침해하는 행위(9항목), 자율적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행위(6항목), 타인과의 교류를 침해하는 행위(3항목)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별 변수가 갖는 내적일관성은 0.929, 0.909, 0.886, 0.904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회답은 4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전혀 학대가 아니다(1점)」에서 「명확하게 학대이다(4점)」로 구성되었다.

3.3. 윤리적 배려

개호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과 개호직원(회답자)에 대해 서면으로 본 조사의 목적과 방법, 개인정보의 취급, 조사 협력에 의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 설문지는 개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기호화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 작성한 질문지에 대해서는 회답자 본인이 직접 반송할 수 있도록 하고 반송을 통해 본 조사의 실시에 동의 한 것으로 취급함을 명시하였다.

3.4. 분석방법

회수된 질문지 중 미기입 등의 결손치가 많은 데이터를 제외한 1,143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확정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노인학대 인식정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노인학대 인식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과 t-test, ANOVA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데이터의 집계와 분석은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대해 표 1에 제시했다. 성별은 여성이 734명으로 전체의 64.2%이었고 남자는 409명으로 35.8%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먼저 30세에서 39세 이하가 370명(32.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평균연령은 37.3세였다. 근무형태는 정규직원이 1,089명으로 전체의 95.3%를 나타냈다. 개호복지관련 학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670명(58.6%)이었다. 홈헬퍼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386명(33.8%)이었다. 근무경력은 10년 이상이 461명(40.3%)이었고 평균 근무경력은 9.2년이었다.

노인학대 관련 교육에 참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566명(49.5%)이었고 개호보험에 관련한 지식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름이 614명(53.7%)이었다.

<표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1,143)

변수	범주	빈도	%
성별	여	734	64.2
	남	409	35.8
연령 Mean (± SD) = 37.3 (± 10.9)	29세이하	331	29
	30세이상 39세이하	370	32.4
	40세이상 49세이하	248	21.7
	50세이상 59세이하	164	14.3
	60세이상	30	2.6
근무형태	상근	1089	95.3
	비상근	54	4.7
개호복지관련 학력보유	있음	473	41.4
	없음	670	58.6
홈헬퍼자격 보유	없음	757	66.2
	있음	386	33.8
근무경력 Mean (± SD) = 9.2 (± 6.4)	3년미만	133	11.6
	3년이상 5년미만	147	12.9
	5년이상 10년미만	402	35.2
	10년이상	461	40.3
학대관련 교육 참가 경험	없음	566	49.5
	있음	577	50.5
개호보험제도 관련 지식정도	잘 모름	614	53.7
	잘 알고있음	529	46.3

4.2.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에 관한 기술통계

조사대상자의 노인학대 인식수준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2에 제시했

다. 개호직원의 전체 노인학대 인식의 총 평균은 2.84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학대인식 수준이 낮았다. 노인학대 유형별 노인학대 인식수준을 살펴보면 먼저, 존엄의 침해에 대한 노인학대 인식은 평균 3.09, 역할의 침해에 대한 노인학대 인식은 2.67, 자율의 침해에 대한 노인학대 인식은 평균 2.54, 교류의 침해에 대한 노인학대 인식은 평균 3.03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는 존엄의 침해에 대한 학대인식 수준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교류의 침해를 학대라고 인식하는 수준이 높았다.

<표2> 노인학대 인식수준

(N=1,143)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치	최대치
노인학대 인식(총 득점)	2.84	0.58	1	4
존엄의 침해	3.09	0.65	1	4
역할의 침해	2.67	0.60	1	4
자율의 침해	2.54	0.61	1	4
교류의 침해	3.03	0.80	1	4

4.3.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노인학대 인식의 상관관계 분석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학대 유형별 노인학대 인식의 관계를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표3에 제시했다.

상관계수의 값들이 작은 것에 유의할 필요는 있지만 연령은 존엄의 침해, 역할의 침해, 자율의 침해에 관한 노인학대 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근무경력도 노인학대 인식과 유의미한 관련이 보이지 않았다.

<표3> 유형별 노인학대 인식과 인구사회학적특성과의 상관관계

(N=1,143)

	존엄의 침해	역할의 침해	자율의 침해	교류의 침해
연령	-0.115 **	-0.061 *	-0.086 **	-0.034
근무경력	-0.026	-0.005	0.026	-0.046

4.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 비교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학대유형별 노인학대 인식 수준을 비교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성별에 따라 노인학대 인식수준에 차이가 났다. 예를 들어 여성이 남성보다 「역할의 침해: 입소노인의 역할을 침해하는 행위」와 「교류의 침해: 타인과의 교류의 기회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더 높게 학대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연령을 보면 29세 이하의 직원이 60세 이상의 직원보다 「존엄의 침해」와 「자율의 침해」에 대해 학대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근무경력에서는 5년에서 10년 미만의 직원이 3년 미만의 직원보다 「자율의 침해」에 대해 학대라고 인식하는 수준이 높았다. 홈헬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일수록 「존엄의 침해」와 「역할의 침해」에 대해 학대라고 인식하는 수준이 높았다. 노인학대 연수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존엄의 침해」와 「교류의 침해」에 대해 학대라고 인식하는 수준이 높았다. 근무형태와 개호보험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정도는 노인학대의 인식수준과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5. 노인학대 인식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노인학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 모델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R제곱의 값들이 작은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지만 Durbin-Watson의 값들이 모두 2에 가까운 수치이고 0 혹은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따라서 표5의 유형별 노인학대 인식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회귀모형은 적합한 모형이다. 또 VIF값이 10이하로 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들을 살펴보면 먼저 존엄의 침해에 관한 노인학대 인식수준에 대해 성별, 연령, 홈헬퍼 자격 보유의 유무, 학대관련 교육경험이 영향을 미쳤다. 역할의 침해에 관한 노인학대 인식수준에 대해 성별, 연령, 홈헬퍼 자격이 영향을 미쳤다. 자율의 침해와 관련된 노인학대 인식수준에는 연령만이 영향을 미쳤고 교류의 침해와 관련된 학대인식 수준에는 성별과 학대관련 교육 참가 경험만이 영향을 미쳤다.

<표4>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 (N=1,143)

성별	존업의 침해			역할의 침해			자율의 침해			교류의 침해		
	M	SD	t/F (p)	M	SD	t/F (p)	M	SD	t/F (p)	M	SD	t/F (p)
남성	3.04	0.61	1.79 (0.07)	2.62	0.55	2.18 (0.03)*	2.54	0.55	0.13 (0.90)	2.96	0.78	2.36 (0.02)*
여성	3.11	0.67		2.70	0.62		2.54	0.64		3.07	0.81	
연령												
29세이하(a)	3.16	0.53		2.69	0.52		2.58	0.54		3.07	0.68	
30세~39세이하(b)	3.12	0.62		2.70	0.61		2.59	0.61		3.01	0.79	
40세~49세이하(c)	3.04	0.72	4.30 (0.002)** a>e	2.68	0.63	1.80 (0.13)	2.50	0.63	2.70 (0.03)*	3.07	0.86	0.78 (0.54)
50세~59세미만(d)	3.01	0.70		2.60	0.62		2.46	0.64		2.97	0.88	
60세이상(e)	2.77	0.95		2.46	0.85		2.33	0.84		2.92	1.09	
개호의 경험년수												
3년미만(a)	3.06	0.58		2.64	0.51		2.44	0.52		3.12	0.70	
3년이상 5년미만(b)	3.12	0.58	2.13 (0.09)	2.68	0.57	0.75 (0.52)	2.52	0.55	3.53 (0.014)* (a<c)	3.05	0.74	0.87 (0.46)
5년이상 10년미만(c)	3.14	0.58		2.70	0.57		2.61	0.58		3.04	0.76	
10년이상(d)	3.04	0.73		2.65	0.65		2.51	0.67		3.00	0.87	
홈헬퍼자격												
유	3.15	0.60	-2.24 (0.03)*	2.72	0.57	-2.18 (0.03)*	2.54	0.56	-0.06 (0.96)	3.10	0.76	-1.87 (0.06)
무	3.06	0.67		2.64	0.61		2.54	0.63		3.00	0.82	
근무형태												
상근	3.09	0.65	-0.96 (0.34)	2.67	0.60	-0.51 (0.61)	2.55	0.61	-2.05 (0.05)	3.03	0.80	0.16 (0.87)
비상근	3.01	0.63		2.63	0.54		2.38	0.58		3.05	0.75	
학대연수												
참가유	3.15	0.65	-3.04 (0.002)**	2.69	0.61	-1.48 (0.14)	2.57	0.62	-1.58 (0.11)	3.09	0.81	-2.26 (0.02)*
참가무	3.03	0.64		2.64	0.59		2.51	0.60		2.98	0.78	
개호보험제도 관련 지식정도												
잘 모름	3.08	0.62	-0.60 (0.55)	2.67	0.57	-0.12 (0.91)	2.54	0.60	-0.18 (0.86)	3.04	0.78	0.49 (0.63)
잘 알고있음	3.10	0.68		2.67	0.63		2.54	0.63		3.02	0.82	

<표5> 노인학대 인식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N=1,143)

	존업의 침해		역할의 침해		자율의 침해		교류의 침해	
	표준화계수	p	표준화계수	p	표준화계수	p	표준화계수	p
성별1)	-0.090	0.003 **	-0.083	0.006 **	-0.029	0.336	-0.087	0.004 **
연령	-0.147	0.000 ***	-0.104	0.005 **	-0.123	0.001 ***	-0.041	0.273
근무형태2)	0.017	0.564	0.012	0.689	0.044	0.147	-0.001	0.963
홈헬퍼자격3)	0.074	0.017 *	0.067	0.033 *	0.016	0.605	0.049	0.116
근무경력	0.011	0.746	0.023	0.493	0.058	0.083	-0.046	0.170
개호복지관련 학력4)	0.011	0.743	-0.017	0.631	-0.009	0.807	0.006	0.857
학대관련 교육 참가 경험5)	0.103	0.001 ***	0.061	0.051	0.057	0.066	0.082	0.009 **
개호보험제도 관련 지식정도6)	0.011	0.719	0.001	0.968	-0.002	0.938	-0.022	0.482
R ²	0.036		0.019		0.017		0.017	
Adj.R ²	0.030		0.012		0.011		0.010	
F	5.355	0.000 ***	2.718	0.006 **	2.538	0.010 **	2.509	0.011 *
Durbin-Watson	2.011		2.049		2.002		2.029	

1) 성별(여=0, 남=1), 2) 근무형태(비정규직=0, 정규직=1), 3) 홈헬퍼자격(무=0, 유=1)
 4) 개호복지관련학력(무=1, 개호복지계 고교졸업=2, 개호복지계 대학졸업=3, 개호복지계 대학원졸업=4)
 5) 학대관련교육 참가 경험(무=0, 유=1), 6) 개호보험제도 관련 지식정도(무=0, 유=1)

*P≤0.05, **P≤0.01, ***P≤0.001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개호직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학대인식의 관련을 명확히 하고 개호직원의 학대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 개호직원의 학대인식은 향후 개호직원의 학대행위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Shinan-Altman et al(2009), p.676), 학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실증은 개호직원의 학대행위를 줄일 수 있는 요인과의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개호직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64.2%, 연령은 평균 37.3세, 흠헬퍼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개호직원은 33.8%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의 개호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개호직원을 대상으로한 白石 외(2011)의 연구 결과와 대체적으로 일치하였다(여성 65.7%, 연령평균 33.6세, 흠헬퍼자격 유 47.5%). 이는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가 편향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단지 회답자의 95.3%가 상근직원이었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개호직원의 전체 노인학대 인식의 총 평균은 2.84점으로 「2점 대체로 학대라고 할 수 없다」 보다는 높지만 「3점 약간 학대라고 할 수 있다」를 밑도는 결과로 전반적으로 개호직원의 학대인식 수준이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 중에서 역할의 침해와 자율의 침해는 각각 2.67점, 2.54점으로 전체 노인학대 인식의 총 평균 2.84점 보다 낮았고 존엄의 침해 3.09점 보다 낮은 점수였다. 다시 말해 시설 내외에서 노인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거나 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개호직원의 학대인식이 매우 낮았다. 이는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건강증진과 유지 서비스 제공의 일차적 목적이지만 노인의 관계적·사회적 욕구 충족에 대한 개입은 후순위라고 지적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이 있다(강은나 외(2014), p.135).

하지만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대인관계와 자율적 의사표현은 ICF(국제생활기능분류)가 제시하고 있는 활동 및 사회참가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노인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金谷(2005), p.159). 개호직원이 노인의 존엄 및 생활을 지원하는 전문가라고 한다면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이 깊은 위의 4가지 영역, 그 중에서도 역할의 침해와 자율의 침해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노인학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호직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먼저 성별과 노인학대 인식수준에 관련이 나타났다. t-test의 결과를 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노인의 역할에 대한 침해와 교류에 대한 침해에 대해 학대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준화 회귀계수의 값이 작은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지만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역시 여성일수록 존엄의 침해, 역할의 침해, 교류의 침해에 대해 학대라고 인식하는 수준이 높았다.

이는 남성 개호직원일수록 신체적 학대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데 남성은 여성보다 개호업무에 종사하거나 접한 경험이 적기 때문에 개호업무와 관련된 정보와 기술을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厚生労働省(2016), p.7; Bell et al(2004)), p.38). 힘의 차이, 힘의 불균형이 남성개호자의 학대 가능성을 높인다는 보고도 있다(Payne et al(2002), p.36). 이를 통해 남성은 여성보다 개호 행위를 실천함에 있어 더 많은 곤란함이 예상되며 어떠한 행위가 부적절한 행위인지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 더 많은 교육과 지식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Bell et al (2004), p.38)은 성별에 따라 사고와 가치관, 학대인식에 차이가 있음에 배려할 필요가 있고 비넷 조사(vignettes research)에서처럼 구체적인 노인학대 사례를 이용한 훈련이 인식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율의 침해에 대해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학대인식이 5점 만점에 2.54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任(2014), p.66)은 자율의 침해에 대해 개호직원의 학대인식이 낮은 이유를 기존의 교육시스템이 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어떠한 생활을 영위하길 원하는지 다시말해, 노인의 자율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남녀 직원 모두에게 노인의 자율을 침해하는 행위가 노인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그 위해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질 높은 개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관점에서 개호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직원이 본인의 개호행위를 노인의 관점에서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역시 학대인식 신장에 효과적일 수 있다. 개호복지시설은 인지기능이 떨어지거나 장애를 가진 노인이 많이 생활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의 자율적 의사결정 권한이 무시되어지는 장면을 자주 접하기 때문에(柴尾(2008), p.1329) 자율의 침해에 대한 인식 강화는 학대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대처행동이라 할 수 있겠다.

이어서 연령에 따라 노인학대 인식 수준에 차이가 나타났다. ANOVA 검증에 대한 결과를 보면 29세 이하의 직원은 60세 이상의 직원보다 존엄의 침해, 자율의 침해에 대한 학대인식 수준이 높았다. 또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연령이 어릴수록 교류의 침해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학대의 인식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어린 개호직원 일수록 권리의 침해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연령이 낮은 사람일수록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일까?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정이나 지역에서 개호와 유사한 업무를 접하거나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개호실습 전후의 대학생의 노인학대 인식수준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실습 전보다 후에 대학생들의 노인학대 인식수준이 낮아졌다고 보고하고 있다. 실습 후 개호현장을 접하게 되면서 직원의 부적절한 개호행위를 열악한 개호환경에 의해 어쩔 수 없는 행위로 수용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谷田 외(2009), p.16). 다시 말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개호행위를 접한 경험이 많아지고 부적절한 개호행위를 수용하게 되며 결국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문제 인식이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연령이 낮은 직원의 경우 학대 인식이 저하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부적절한 개호행위에 대한 수퍼비전(supervision)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연령이 높은 직원에게는 먼저 부적절한 개호행위 혹은 학대행위에 대한 문제인식을 함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물론 연령이 낮은 직원과 마찬가지로 교육으로 신장된 직원의 학대인식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절한 코멘트와 수퍼비전이 동반되어야 한다.

홈헬퍼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개호직원일수록 존엄의 침해와 역할의 침해에 대한 노인학대 인식수준이 높았으며, 노인학대 관련 연수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존엄의 침해와 교류의 침해에 대한 학대인식이 높았다. 이는 개호복지사 자격증 혹은 홈헬퍼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학대인식이 높고 노인학대 관련 교육이나 연수경험이 있는 직원일수록 학대인식이 높다고 하는 마츠모토(松本(2015), p.54)와 나가시마(永島) 외((2010), p.15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훈련과 교육이 학대인식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Astrom et al(2002), p.69). 이는 자격증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개호기술 혹은 인지증 등의 노인성 질환에 대한 지식과 이해력이 높다는 것, 특히 일본의 개호복지사 혹은 홈헬퍼 자격증 취득을 위해 수강해야하는 「노인의 권리옹호」라는 과목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의 노인학대 인식을 높이는데 일정부분 기여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반대로 자율의 침해에 대해서는 자격증 보유 유무나 노인학대 관련 교육수강 경험이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존의 노인학대 관련 교육이 노인의 자율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역에 대한 인권교육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개호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보다 교육과 연수를 통해 개호직원의 인식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누구나 명확하게 학대라고 인식할 수 있는 부적절한 개호행위, 예를 들어 존엄의 침해나 교류의 침해에 대해 문제인식을 강화하는 교육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학대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곤란한 사례, 예를 들어 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개호환경에 대해 문제시하고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것, 즉 경도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문제인식과 대안적 개입을 동시에 강화하는 대책이 향후 질 높은 개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중시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개호직원의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만으로는 노인학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松本(2015), p.49)

마지막으로 노인학대방지법의 목적이기도한 존엄이 있는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인이 원하는 케어, 받고 싶은 케어가 무엇인지, 시설에서 노인은 마지막을 어떻게 생활하고 싶은지, 노인 본인의 시점과 가치관에 근거한 케어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의 생활과 관련된 욕구와 바램에 대해 파악하고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은 개호직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학대인식을 증가시키는데 유효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손치가 있는 케이스를 제외하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결과의 해석 및 일반화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호직원의 노인학대 인식과 그러한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요인과의 유의미한 관계를 보다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은나·이민홍(2014) 「시설거주노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유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노인 요양시설 외부 관계자원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4(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133-160.
- 김경민·가복만·장세철 「한·일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비교연구」 『일본문화학보』 53, 일본문화학회, pp.241-259.
- 김경민·장세철 「시설의 사회화에 관한 연구: 일본의 소노다엔(특별양호노인홈)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43, 일본문화학회, pp.393-415.
- 이민홍(2006) 「장애노인 수발자의 학대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4,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pp.77-96.
- 任貞美(2015) 「일본의 고령자 학대 『정의』에 관한 탐색적 연구: Systematic Review를 통해서」 『일본문화학보』 65, 일본문화학회, pp.247-268.
- 任貞美(2014) 「介護職員の虐待認識に基づいた高齢者虐待定義の再構築への試み: 『準虐待』の構造と特徴に着目して」 『社会福祉学』 54(4), 日本社会福祉学会, pp.57-69.
- 岩田秀信(2015) 「福祉施設における虐待防止具体的な実践方法」 『第 34 回 全国社会福祉法人経営者協議会滋賀大会での発表資料集』, 社会福祉法人あいの土山福祉会エーデル土山, pp.57-69.
- 大塩まゆみ(1997) 「高齢者虐待・放任の概念についての小論:その予防に向けて」 『社会福祉研究』 70, 鉄道弘済会社会福祉部, pp.178-183.
- 金谷さとみ(2005) 「施設の高齢者理学療法: 複雑な状態と多様なニーズに応えるために」 『理学療法学』 32(4) 公益社団法人日本理学療法士協会, pp.159-162.
- 厚生労働省(2016) 『平成18年年度、平成26年度高齢者虐待の防止、高齢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に基づく対応状況等に関する調査結果』 pp.1-15. (http://www.mhlw.go.jp/file/04-Houdouhappyou-12304500-Roukenkyokuitaisakusuishinshitsu/-Ninchishougyakutaibo_ush0000111665.pdf) (2016년 6월 1일 접속)
- 柴尾慶次(2008) 「施設内における高齢者虐待の実態と対応」 『老年精神医学雑誌』 19(12), ワールドプランニング, pp.1325-1332.
- 白石旬子·藤井賢一郎·大塚武則·ほか(2011) 「個性が尊重されない「組織風土」における, 「キャリア・コミットメント」の高い介護職員の離職意向と「介護観」の関連」 『老年社会科学』 33(1), 日本老年社会科学会, pp.34-46.
- 谷田恵美子·大橋千代美·遠藤明美(2009) 「老年看護分科会 高齢者虐待の認識変化: 老年看護実習前後の比較」 『岡山県看護教育研究会誌』 33(1), 山県看護教育研究会, pp.16-24.
- 中村京子(2012) 「わが国の高齢者虐待防止法の『虐待』定義に関する一考察」 『社会関係研究』 18(1), 熊本学園大学, pp.79-109.
- 永島稔子·倉田康路·滝口真ほか(2010) 「介護サービスの改善を視点とした高齢者虐待防止策の検討: 介護従事者を対象としたアンケート調査の分析から」 『介護福祉学』 17(2), 日本介護福祉学会, pp.155-163.
- 認知症介護研究・研修仙台センター(2008) 『施設・事業所における高齢者虐待防止の支援に関する調査研究事業調査報告書』 平成19年度老人保健事業報告書, pp.1-187.

- 松本望(2013) 「認知症グループホームの介護職員が求める虐待予防策因子の構造と課題: 職員・職場の属性による認識の違いをもとに」 『高齢者虐待防止研究』 11(1), 日本高齢者虐待防止学会, pp.44-53.
- 松本望(2015) 「認知症グループホームの介護職員の虐待に対する意識に影響を与える要因の検討」 『高齢者虐待防止研究』 11(1), 日本高齢者虐待防止学会, pp.49-58.
- 山田祐子(2008) 「高齢者虐待の実態調査から読み取れること: 特集高齢者虐待と虐待防止」 『老年精神医学雑誌』 19(12), ワールドプランニング, pp.1307-1316.
- 渡部克哉(2008) 「高齢者虐待の定義をめぐって: 国際機関, 英米, そして日本」 『社会学研論集』 12, 早稲田大学大学院 社会科学研究所, pp.157-171.
- Åström, S., Bucht, G., Eisemann, M., et al. (2002). Incidence of violence towards staff caring for the elderly. *Scandinavian journal of caring sciences*, 16(1), Nordic College of Caring Sciences, The Haworth Press, pp.66-72.
- Bell, B., Oyeboode, J., & Oliver, C. (2005). The physical abuse of older adults: The impact of the carer's gender, level of abuse indicators, and training on decision making.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16(3), Taylor & Francis Group, pp.19-44.
- Bonnie, Richard J. & Wallace, Robert B. eds. (2003) *Elder Mistreatment: Abuse, Neglect, and Exploitation in an Aging America*,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2008, 多々良夫監訳 『高齢者虐待の研究——虐待, ネグレクト, 究明のための指針と課題』 明石書店, pp.1-672.)
- Choi, N. G., & Mayer, J. (2000). Elder abuse, neglect, and exploitation: Risk factors and prevention strategies.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33(2), The Haworth Press, pp.5-25.
- Dyer, C. B., Pavlik, V. N., Murphy, K. P., & Hyman, D. J. (2000). The high prevalence of depression and dementia in elder abuse or neglect.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48(2),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pp.205-208.
- Payne, B. K., & Gray, C. (2002). Theoretical orientation and responses to abuse in nursing homes: A survey of ombudsmen from across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Social Work in Long-Term Care*, 1(4), The Haworth Press, pp.31-54.
- Schiemberg, L. B., Barboza, G. G., Oehmke, J., Zhang, Z., Griffore, R. J., Weatherill, R. P., Heydrich L., & Post, L. A. (2011). Elder abuse in nursing homes: An ec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23(2), Taylor & Francis Group, pp.190-211.
- Shinan-Altman, S., & Cohen, M. (2009). "Nursing aides' attitudes to elder abuse in nursing homes: The effect of work stressors and burnout". *The Gerontologist*, 49(5), The Gerontological Society of America, pp.674-684.

논문 투고 일자 : 2016. 06. 06.
논문 심사 일자 : 2016. 07. 25.
게재 확정 일자 : 2016. 07. 27.

＜要旨＞

日本における介護職員の高齢者虐待認識に影響を与える人口社会学的要因

任貞美

本研究の目的は、日本の介護福祉施設に勤務する介護職員の虐待に対する認識と人口社会学的特性の関連を明確にし、介護職員の虐待認識を向上させるための取り組みを提案することである。全国の介護福祉施設に勤務している介護職員5000人を対象に質問紙調査を行った。データの分析は、記述統計、相関分析、t-testとANOVA検定を用いた。

その結果、性別、年齢、ホームヘルパー資格、虐待に関する教育経験が介護職員の虐待認識と有意な関連がみられた。以上の結果をもとに、介護職員の虐待認識を高める取り組みについて提言を行った。

Socio-Demographic Factors that Affect the Elder Abuse Recognition
of Nursing Care Staff in Japan

Lim, Jeong-Mi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o-Demographic factors of the care staff and the recognition of elder abuse and to suggest measures to improve the elder abuse recognition of the care staff. The 5,000 care staff who work in nursing homes across Japan participated in this questionnaire survey. Analysis of the data used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test and ANOVA test. As a result, gender, age, home helper qualifications and educational experience about the elder abuse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elder abuse recognition of the care staff. Based on the above results, it was implicated in efforts to increase the abuse recognition of the care staff.